



감리용역 발주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감리제도의 발전방향제시

글 _ 협회 제도연구실장 남 기 범(No. 8117)

1. 서 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방지를 통한 공공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5년말 「전력기술관리법」(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이 제정·시행되면서 비로써 전기감리용역은 건축과 분리되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기감리업자에게 발주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상으로는 전기감리용역의 분리발주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력기술관리법의 탄생이후 전기감리는 건축 등 타 분야 감리용역과 분리하여 용역대가가 산정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리발주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감리용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PQ(Pre-Qualification)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PQ제도가 도입되었고, 또한 2005년에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PQ기준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PQ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기감리업자 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급현상, 감리원 고용문제 등이 해소됨으로써 전기감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라

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대형업자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으로 남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Q제도는 수의 계약에 따른 과당경쟁을 탈피하면서 저가 도급에 의한 부실감리 방지, 감리시장 확대 등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 년 동안 PQ기준을 개선해 왔다.

분리발주제도 역시 건축, 전기, 소방 등 각 설비전문가의 수평적 지위관계에 따른 설비공사의 품질 확보, 계약제도의 선진화,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측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명분아래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감리용역의 통합발주제도 도입,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감리기능을 대체하려는 등 전기감리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Q제도, 분리발주제도 및 통합발주제도가 전기감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전기감리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감리제도 현황

2.1 국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기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전기감리에 관한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제화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외부 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기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08년말 현재 등록된 전기감리업자는 940개이다.

감리원은 국가기술자격과 경력연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단계로 구분하며, 전력시설물의 공사 규모에 따라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할 감리원의 등급을 따로 정하고 있다.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전력시설물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배치인원수를 정부에서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리대가는 고시 기준에 따른 감리원수에 감리원 인건비를 계상하여 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기술실명제를 통한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원배치현황을 일정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법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도 감리 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기술실명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2.2 국 외

2.2.1. 미국

미국에서는 감리업체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한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유자격자(license), 과거실적 및 보유인력 등 회사자격,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험과 능력, 팀의 인적구성 및 개개인 능력, 해당업무 및 관련법규 이해도, 계획공정 이행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업체에게 설계, 엔지니어링, 공사감리 등이 발주될 경우,

업체선정절차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준하므로 각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사감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발주하기도 하지만 발주되는 업무의 범위가 결정되면 공사감리업체의 선정은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2.2.2. 대 만

대만에서는 전기설계·감리의 용역입찰을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공개입찰, 선택적 입찰 및 제한입찰로 입찰방식을 나누며 공개입찰은 공고방식으로 특정하지 않은 업체를 요청하여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선택적 입찰은 공고방식으로 사전에 일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업체의 자격에 대하여 심사 후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를 요청하여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방식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2.3. 독 일

연방정부가 발주자인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기타 공고 발주기관 공사에는 각 기관마다 정해진 표준계약서나 기술자 단체에서 발행하는 계약양식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원 또는 기술자의 현장 배치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감리업체의 선정은 PQ제도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로는 전문기술자 보유현황, 과거실적 등이 있다.

2.2.4. 영 국

영국에서의 감리는 공사관리전문회사가 실시하는 품질관리의 개념이다. 즉 현장에서의 검측은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실시하며, 공사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관리를 총괄하는 회사와 계약하여 이회사가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한다. 감리와 관련된 법령은 Building Act, Building Regulation, Health and Safety 등이 있으며, 감리업체 선정은 미국과 같이 PQ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의 평가항목으로는 공사수행능력, 재정능력, 현재 또는 향후 프로젝트 물량, 유사프로젝트 실적, 경쟁입찰에 대한 관심도 등이다.

3. 감리용역의 발주제도 현황 및 문제점

3.1. 감리용역의 분리발주제도

3.1.1. 현황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전기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 등 다른 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비를 따로 계상하고 전기공사비에 비례하여 전기감리대가를 산정한 후 당해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전기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전기감리용역은 분리발주의 의미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발주처에서는 예전의 관행으로 발주문제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의 시행이후 전기감리용역의 분리발주 기능이 살아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점은 다음과 같이 비용우위,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충실성, 설비의 품질보증,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1) 비용우위 : 발주자와 실제 시공자 혹은 설계자·감리자인 전문업자 간에 종합건설업자·건축사사무소가 끼어들지 않음으로써 중간마진 등 유통구조 단계를 줄일 수 있어 비용우위를 가질 수 있다.
- 2) 커뮤니케이션 : 발주자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설계·감리원이 공정별로 직접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왜곡을 배제할 수 있다.
- 3) 전문성 : 발주자가 해당 설계·감리의 최고 적격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최선의 전문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 4) 충실성 : 통합감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야별 skip방식 가능성이 있다.
- 5) 설비 품질 보증 : 전기분야의 부실시공 시, 에너지 낭비 등 운전경비가 증가하고 설비 라이프사이클 단축에 따른 유지비 및 개·보수비 증가와 같은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분리발주 시행에 의하여 단순히 법정기간 내의 하자방지 뿐만 아니라 설비 라이프사이클 기간 동안의 하자, 개·보수 시 재시공까지 고려한 양질의 시공을 통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과 성능이 보존된 설비가 가능하다. 또한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원 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액이

용역비용 부분에 투입됨에 따라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6)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기어음지급, 용역대금 미지급, 이중계약에 의한 비자금 형성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발생의 원천적인 소지를 제거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분리발주제도는 업역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보무로서, 이를 통하여 건설감리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감리업체의 자금력 및 기술축적 유도를 통한 국가기간산업의 발전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3.1.2. 문제점

「전기공사법」에서 전기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분리발주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발주자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공의 전기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행정 불편과 비용부담 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기감리용역도 건축감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상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공공기관발주 감리용역의 PQ제도

3.2.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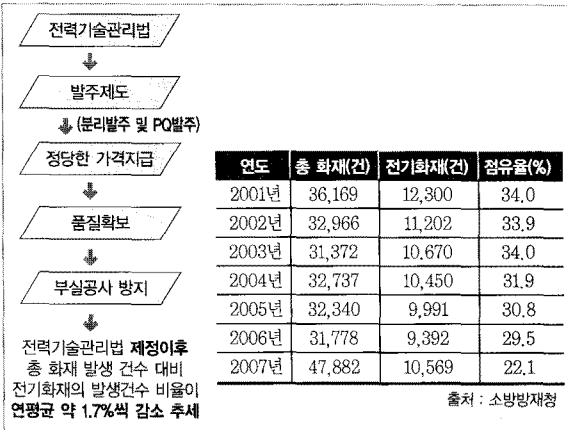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2억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PQ기준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Q제도는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용역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감리요인을 제거하여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전기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가 도입된 후 공공발주의 전기감리용역은 정부가 고 시한 감리대가의 약 85%선이 유지되고 있는 등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계약이 사라져 감리업계 재정상태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줄뿐 아니라 부실감리 예방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이후 감리제도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의 총 화재 발생건수 대비 전기화재의 발생건수 비율은 연평균 약 1.7%씩 감소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1] 총화재 중 전기화재 점유율



3.2.2. 문제점

현행 감리용역의 PQ적용대상 공사의 규모는 건축, 전기 등 각 설비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리용역비가 1억 9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감리대가가 건축감리대가의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건축물공사에 대하여 건축감리는 PQ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전기감리는 PQ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리업자 선정시 발주자의 혼란가중은 물론 동일 건축물공사에 대해 건축감리자는 PQ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전기감리업자는 수의계약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전기감리대가가 낮아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가 우려될 수 있다.

PQ적용 대상기관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대형 건축물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PQ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행 적격심사기준을 보면 기술적인 수행능력은 다소 낮더라도 가격적인 요소로 감

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가격요소(보유기술인력,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등)로 감리업자가 선정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3. 공동주택감리의 PQ제도

3.3.1 현황

지난, 2005년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PQ기준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주택건설공사 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발주건수는 291건으로서 전기감리시장규모가 2,000여억 원에 달했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는 감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 세부 평가자료는 전력기술인협회와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역입찰공고를 협회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PQ제도가 정착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등 타 감리용역과 분리발주가 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사업승인과 동시에 건축감리자 모집공고와 전기감리자 모집공고를 별도로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감리업자 선정·평가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PQ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기감리대가가 상당부분 현실화 되었다.

지난 2005년에는 공동주택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수별 감리원의 적정 배치기준을 개정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수의계약 관행에 따라 전기감리대가는 정부가 고시한 대가 기준의 약 20%선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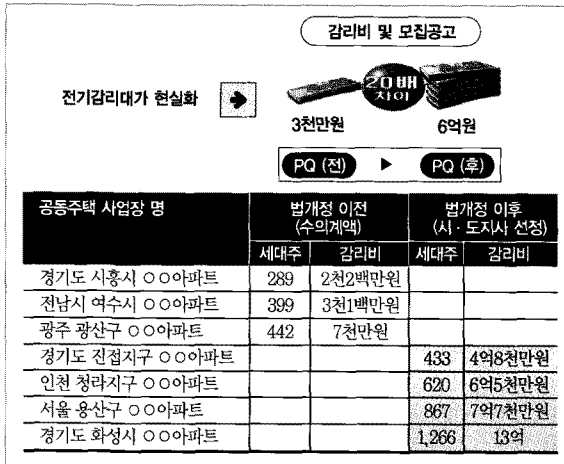
동 제도가 도입된 후, 전기감리대가는 고시기준의 약 85%선을 유지하게 됨으로서 공동주택의 세대수별 적정 감리원의 배치가 가능하여 부실감리도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전기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국내 전기감리시장 규모는 동 제도의 도입전과 후를 비교할 때 약 5,000억 규모에서 7,000억원 규모로 규모면에서는 매우 신장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감리원의 처우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승인과 아울러 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 선정결과를 당해 감리업자에게 통보하면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사착공신고를 위해 전기감리업자와의 감리계약 체결을 종용하게 되며, 주택건설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입주허가(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전기감리비의 잔금지급을 서두르게 됨으로서 그 만큼 전기감리업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공동주택감리의 PQ제도



3.3.2. 문제점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그 적용대상 규모를 3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시·도지사가 건축감리자를 지정하는 적용대상 규모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전기감리는 300세대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 덤핑에 따른 부실감리가 우려되고 있다.

중전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시·도지사가 PQ기준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요한 사실은 수의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던 지난 2005년까지도 비록 감리대가는 저가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세대수별 감리원 배치기준은 현행기준과 같이 여러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자 입장에서 보면 배치인원수는 높은 반면 감리대가가 낮아 부실감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4. 개선방안

4.1.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를 보면 전력시설물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감리는 건축 등 다른 감리자와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지위를 갖고 감리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한 분리발주의 입법정신이 담겨져 있으나 분리발주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 수요발생시 전기감리용역은 건축감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4.2. PQ세부평가기준 합리화

PQ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PQ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감리업자의 낙찰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평가항목은 역시 감리원의 경력사항 및 감리업체의 수행실적 등이다.

부실감리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리업자 선정·평가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있도록 차별화 되어야 하지만,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도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국내의 전기감리 시장규모와 관련업체의 등록현황, 감리원의 수급현황,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4.3. PQ적용 대상용역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9천만원 이상의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는 PQ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감리의 용역업자 선정에 따른 PQ적용 대상금액과 동일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부실감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에 따른 국가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PQ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기감리의 PQ적용대상 공사의 규모가 높아 연간 전기감리의 PQ적용대상 발주물량이 적어 사실상 PQ제도의 운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감리가 PQ적용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공사의 전기감리도 PQ대상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감리의 PQ적용대상 기준을 현행 전기감리비 1억 9천만원이상에서 약 1억원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발주공사라 하더라도 건축물 연면적이 10,000㎡

를 초과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전력시설물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부실감리 예방을 위해 전기감리업자는 PQ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4. 공동주택감리자의 시·도지사 선정대상 확대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실제 소유자(입주자)가 아닌 발주자(사업주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감리업체가 선정됨으로 실제 소유자(입주자)가 아닌 발주자(사업주체)는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강요를 은연중에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발주자(사업주체)의 요구를 무시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감리비는 발주자(사업주체)가 감리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감리업체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발주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건축감리자 선정과 같이 300세대에서 100세대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공사의 전기감리업자도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3] 발주방식 종합분석

구분	공사규모	감리용역 발주방식	장, 단점 비교	
공공발주	2억원 이상	PQ발주(발주자 선정)	• 감리업자 지위보장 • 감리대가 현실화 • 분리발주 일부 유지	
	2억원 이상	약식PQor 경쟁입찰	• 감리업자 지위보장 • 분리발주 일부 유지	
민간발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PQ발주(시·도 선정)	• 감리업자 지위보장 • 감리대가 현실화 • 분리발주 일부 유지
		300세대 이하	수의계약(건설사 선정)	• 텀핑 발주 • 부실감리 우려
	건축물 등 기타 전기설비	수의계약 or 경쟁입찰	• 텀핑 발주 • 부실감리 우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리발주 및 PQ제도 등 감리용역의 발주형태가 감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리발주제도는 감리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감리업체의 자금력 및 기술축적 유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PQ제도 역시 감리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1) 적정한 감리대가를 받지 못해 적합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감리업체에게 감리대가를 현실화 시켜주어 감리품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 2) 참여업체의 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참여감리원 등을 평가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감리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감리의 위험성을 해소하였다.
 - 3) PQ평가로 감리업체는 기술력축적 및 감리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감리경쟁력의 확보로 감리회사는 적정 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감리원의 보수는 증가하게 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4) 전기감리업체가 건축 등 다른 업역과 수평적 관계로 개선되었으며 전기감리자가 건설분야의 독립된 한 업역인 전기분야의 책임감리자가 됨으로써 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지위가 많이 향상 되었다.
- 위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감리업체 선정은 감리시장을 건설하게 만들었으며, 감리품질확보와 전력기술 개발 등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상과 같이 분리발주 및 PQ발주방식은 감리업체의 발전 및 전력산업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발주제도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건축감리가 PQ적용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공사의 전기감리도 PQ대상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감리의 PQ적용대상 기준을 현행 전기감리비 2억원이상에서 약 1억원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 2)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10,000㎡)은 연면적,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건물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의 사업승인권자가 PQ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3)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공사에 대하여도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품질확보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PQ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